

인해서 그것을 좀더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交通管理室에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仁明 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소관 안전처리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財務局 소관 안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59分 會議中止)

(14時 26分 繼續開議)

○委員長 黃仁明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오전에 企劃管理室 소관 안전이 심의가 늦어서 오늘 회의가 좀 늦었습니다. 이 점 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4.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黃仁明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特別市長을 대리하여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太壽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에 대해서 財務局長이 보고드리겠습니다.

議案番號 第767號인 '97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취득이 4건, 처분이 1건으로 모두 5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초구 서초동 소재 토지 1필지 2,356평은 삼풍백화점 사고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보상재원 마련과 저희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용 토지로 비축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 재산이고, 중구 신당동 소재 청평화상가 토지 1필지 563평과 건물 3,397평은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삼풍백화점 사고 수습대책

의 일환으로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토지소유자인 삼풍건설산업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 광진구 노유동 소재 토지 2필지 1,002평에 대해서는 건물이 여기 1,086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부여성발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한현선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 건 강북구 수유동소재 토지 4필지 441평과 건물 95평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허준외 3인으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하는 1건은 동작구 신대방동소재 토지 2필지로서 1,489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치구의 공공사업용으로 동작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동작구청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仁明 네,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專門委員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參 照)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 제안일자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1997년 4월 22일

나. 의안번호 : 재767호

다.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라. 위원회 회부일자 : 1997년 4월 29일

II.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

<p>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p> <p>III. 주요골자</p> <p>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처리에 따른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분구중심용지 및 청평화상가매입,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부지매입,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매입과 동작구 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p> <p>□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p> <p>○취득 4건</p>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토지 : 8필지</td> <td style="padding-left: 5px;">14,422.8㎡ (4,362.8평)</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건물 : 4동</td> <td style="padding-left: 5px;">15,134.7㎡ (4,578.2평)</td> </tr> </table> <p>○처분 1건 : 토지 2필지 4,924.0㎡(1,489.5평)</p> <p>IV. 관계법규 및 참고사항</p>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잡종재산의 매각)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공유재산의 범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가격의 결정) <p>나. '97공유재산 당초 관리계획 명세</p>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 rowspan="4"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취득 16건</td> <td style="padding-left: 5px;">토지 5건</td> <td style="padding-left: 5px;">14,005.0㎡(4,236.4평) 126억 3,131만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건물 8건</td> <td style="padding-left: 5px;">15,546.0㎡(4,702.6평) 94억 8,600만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선박 3건</td> <td style="padding-left: 5px;">13척 21억 7,800만원</td> </tr> <tr> <td></td> <td></td> </tr> </table> <p>V. 검토의견</p> <p>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의 범위로 지정된 것을 공유재산이라 하는데 공유재산의 종류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에 의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p> <p>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p>	토지 : 8필지	14,422.8㎡ (4,362.8평)	건물 : 4동	15,134.7㎡ (4,578.2평)	취득 16건	토지 5건	14,005.0㎡(4,236.4평) 126억 3,131만원	건물 8건	15,546.0㎡(4,702.6평) 94억 8,600만원	선박 3건	13척 21억 7,800만원			<p>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서울특별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p> <p>'97시유재산관리계획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80%;"> <tr> <td>토지 5건</td> <td>매입 14,005㎡</td> <td>123억 6,131만원</td> </tr> </table> <p>※(자연녹지공간 보존을 위한 토지 27필지, 장충·쌍문·수색·신교소방파출소부지 매입)</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80%;"> <tr> <td>선박 3건</td> <td>13척</td> <td>21억 7,800만원</td> </tr> </table> <p>※(행정선 1척, 도강선박 예선 4척, 도강선박 부선 8척)</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80%;"> <tr> <td>건물 8건</td> <td>15,546㎡</td> <td>94억 8,600만원</td> </tr> </table> <p>※(소방파출소 3개소(송정·잠실·거여소방파출소) 개축, 소방학교증축 1개(도봉구 방학동 소재), 소방파출소신축 2개(가락·개포소방파출소), 동작소방서 및 방재체험관 신축 1개소, 중랑소방서 신축 1개소)으로 되어 있었는데</p> <p>금반 제안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리에 따른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분구중심용지 7,788.4㎡(2,356평 : 공영주차장용으로 사용계획추진) 및 청평화상가 매입(토지 9,650.7㎡, 건물 11,230.0㎡),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부지 매입(토지 3,312.1㎡, 건물 3,589.8㎡),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토지 1,460.0㎡, 건물 314.9㎡)과 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매각(토지 4,924.0㎡)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서</p> <p>□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은</p> <p>○취득 4건</p>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토지 : 8필지</td> <td style="padding-left: 5px;">14,422.8㎡ (4,362.8평)</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건물 : 4동</td> <td style="padding-left: 5px;">15,134.7㎡ (4,578.2평)</td> </tr> </table> <p>○처분 1건 : 토지 2필지 4,924.0㎡(1,489.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p> <p>취득재산 1번 : 서초구 서초동 1685-8 대지 7,788.4㎡(2,355.4평)은 삼풍백화점 부지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경매에 있어 당초 예정가격 381억 2,241만 8,000원 대비 5차 조</p>	토지 5건	매입 14,005㎡	123억 6,131만원	선박 3건	13척	21억 7,800만원	건물 8건	15,546㎡	94억 8,600만원	토지 : 8필지	14,422.8㎡ (4,362.8평)	건물 : 4동	15,134.7㎡ (4,578.2평)
토지 : 8필지	14,422.8㎡ (4,362.8평)																										
건물 : 4동	15,134.7㎡ (4,578.2평)																										
취득 16건	토지 5건	14,005.0㎡(4,236.4평) 126억 3,131만원																									
	건물 8건	15,546.0㎡(4,702.6평) 94억 8,600만원																									
	선박 3건	13척 21억 7,800만원																									
토지 5건	매입 14,005㎡	123억 6,131만원																									
선박 3건	13척	21억 7,800만원																									
건물 8건	15,546㎡	94억 8,600만원																									
토지 : 8필지	14,422.8㎡ (4,362.8평)																										
건물 : 4동	15,134.7㎡ (4,578.2평)																										

<p>정매각가격 237억 6,263만 5,000원으로</p> <p>취득재산 2번 : 중구 신당동 217-91 대지 1,862.3㎡(563평) 건물 11,230(3,397평)은 청평화상가 건물로서 당초 예정가격 595억 5,338만 9,000원 대비 서울민사지방법원 5차 조정매각가격 390억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는데 삼풍사고처리에 따른 보상재원과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삼풍건설산업(주)로부터 서울특별시에 재산관리처분권이 위임되어 있는 재산이며</p> <p>취득재산 3번 : 광진구 노유동 9-13 외 1필지 토지 3,312.1㎡ 55억 5,733만원과 건물 3,589㎡ 3억 5,125만 3,000원은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부지이며</p> <p>취득재산 4번 : 강북구 수유동 125-12 외 3 토지 1,460㎡(44.65평) 13억 6,946만원과 건물 314㎡(94.98평) 3,450만 2,000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p> <p>매각대상재산목록 1번은 신대방동 460-1 4,877㎡와 같은동 479-3 47㎡, 합 4,924㎡(1,489.5평) 예정가격 30억 1,348만 8,000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제1호에 의거 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로 동작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인바, 지방재정관련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p> <p>[종합의견]</p> <p>의안번호 제767호로 제안된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와 제96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관계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p> <p>.....</p> <p>○ 委員長 黃仁明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p> <p>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p>	<p>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네, 盧載東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p> <p>○ 盧載東委員 우선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에 나와 있는 기타 3건 이래 가지고 수량이 13척 해 났는데 13척이 무엇인지, 21억 7,800만원.</p> <p>○ 財務局長 金太壽 몇 페이지?</p> <p>○ 盧載東委員 3페이지요. 13척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삼풍건은 1,2번이 공매유찰가액인데 유찰 이전에 감정평가액이 건별로 1번, 2번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청평화상가를 이것을 390억원에 이제 서울시가 세트업하게 되면 여기 들어 있는 상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전부 얼마가 되는지, 그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p> <p>○ 委員長 黃仁明 네, 財務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財務局長 金太壽 이 기타 3건 13척은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와 소방구조대 거기에 쓰는 배입니다.</p> <p>또 삼풍사고에 따른 산출이 당초 매입가는 삼풍분구용지는 당초에 1차 예정가는 38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237억 원은 그 당초 가격의 62.3%의 가격입니다.</p> <p>그 다음에 청평화상가는 당초 예정가가 595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의 65.5%인 현재 3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p> <p>그리고 지금 이 상인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삼풍주식회사에 납부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51억원입니다.</p> <p>○ 盧載東委員 그러면 이것은 채무를 서울시가 승계하는 것이죠?</p> <p>○ 財務局長 金太壽 그렇습니다.</p> <p>○ 盧載東委員 이 배는 지금 한강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p> <p>○ 財務局長 金太壽 네, 한강에 띄울 것입니다.</p> <p>○ 盧載東委員 이게 보트입니까?</p> <p>○ 財務局長 金太壽 보트도 있고, 어로지도선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의 구조난배도 있고 그렇습니다.</p> <p>○ 盧載東委員 이렇게 전부 하고 나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삼풍 것이?</p> <p>○ 財務局長 金太壽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p>
---	---